

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 
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7 월 11 일

여 수 시 장 2023.7.11



여수시 조례 제1906호

붙임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

## 여수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

여수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여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

#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여수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그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인구정책”이란 인구 유출입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여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수립·시행하는 각종 정책 또는 사업을 말한다.
- “인구영향평가”란 주요 정책·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구 구조 및 시민에게 끼칠 긍정적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.
- “생활인구”란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,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① 인구정책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.  
②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

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## 제2장 인구정책

- 제5조(인구정책 기본계획)**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 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 
1.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, 인구이동 변화 등 분석  
2. 인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
3.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 
4. 인구정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
5.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 
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제6조(인구정책 사업)**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 
1. 산업별 균형 발전을 위한 조정에 대한 사업  
2. 일자리·문화·복지·주택·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 
3. 결혼·임신·출생·양육 지원 사업  
4. 전입한 시민에 대한 지원 사업  
5. 청년, 신혼부부·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 
6.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 
7.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
8. 인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 
9. 인구정책 관련 민관 협력 사업  
10.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
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 
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- 제7조(인구영향평가)** 시장은 인구정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**제8조(재정지원)**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기업·법인·단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그 법령과 조례를 따른다.

**제9조(사업의 위탁)**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법인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
**제10조(포상)**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상황 등을 평가하여 우수기관·기업, 법인, 개인 및 공무원 등을 「여주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인구정책위원회

**제11조(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해 여주시인구정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
2. 인구정책 사업 발굴 및 제안
3.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
4.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심의·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

**제12조(위원회 구성 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부시장이 되고, 위원 회의 부위원장(이하 "부위원장"이라 한다)은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 중에서 선임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당연직 위원: 시 소속 공무원 중 해당업무 담당국장
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 사람 (이하 "위촉위원"이라 한다). 이 경우 가목의 사람은 1명 이상 위촉 해야 한다.

- 가. 인구정책 관련 기관 업무 관계자
- 나.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
- 다.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
  - 라.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-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.

**제13조(위원의 임기)**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14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15조(위원의 해촉)**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**제16조(위원회 운영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③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긴급한 안건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

없을 때에는 서면이나 영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·자문할 수 있다.

- 제17조(분과위원회)**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 
② 분과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1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)** 별표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를 포함하여 적용한다.

[별표]

사업별 지원 기준 및 내용(제6조 관련)

지원분야	지원기준 및 대상	지원내용	비고
1. 전입 인센티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다른 시·군·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시로 전입하여 6개월이 지난 시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0만원</li> </ul>	<p>최초 1회 지급 단, 전입자 중 출생록일 기준 1년 미만 출생 아 시 신규 학부모는 예로 지급할 수 있다.</p>
2. 전입 이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다른 시·군·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시로 전입하여 1년이 지난 시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0만원</li> </ul>	
3. 전입 장려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학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른 시·군·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시로 전입한 관내 소재 대학교 대학생</li> </ul> </li> <li>○ 해양경찰교육원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른 시·군·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시로 전입한 해양경찰교육원생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50만원 이내</li> <li>○ 30만원 이내</li> </ul>	<p>전입 장려금을 지급받은 시민은 전입 인센티브 및 전입 이사비 지원 불가</p>
4. 전입유도 우수기업·기관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다른 시·군·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시로 전입한 직원이 있는 기업 또는 기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입유도 1인당 3만원</li> <li>○ 총액 300만원 이내</li> </ul>	
5.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여수시 관내 전세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실제 이자납부액 기준 월 최대 15만원 이내</li> </ul>	<p>부부 한 명 이상 해당 주택 거주 부부 모두 시가점</p>
<p>* 지원금은 여수상품권(종이형·카드형·모바일)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* 분야별 지원 자격, 지원 방법 및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			